

독일**연방대법원,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창성과 침해 판단 기준 제시
(BGH, Urteil vom 02.07.2026, I ZR 96/22, USM Haller II)**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1. 개요**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2026년 7월 2일 선고한 USM Haller II 판결에서 모듈식 가구 시스템의 응용미술저작물 해당 여부와 그 침해 판단기준을 다루었다. 이 판결은 BGH가 선결재판을 제청한 USM Haller I 사건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2025년 12월 4일 Mio/Konektra 병합사건¹⁾에서 제시한 해석을, 독일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BGH는 응용미술저작물에 다른 저작물보다 높은 독창성(Originalität)을 요구할 수 없고, 독창성은 저작자의 주관적 창작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 대상에 객관적으로 표현된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선행 저작물과 새로운 대상의 전체 인상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행 저작물의 보호를 근거 짓는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 전체에서 재인식 가능한 형태로 수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BGH는 종래 독일 판례에서 창작성 수준(Gestaltungshöhe)이 낮으면 보호범위가 좁아진다고 설명해 온 입장을 사법재판소 판결에 맞추어 재구성하였다. 창작성 수준은 저작권의 법적 보호범위를 규범적으로 결정하지 않지만, 보호되는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서 재인식될 수 있는지에는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BGH는 USM Haller 가구 시스템의 저작물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잘못된 법적 기준에 따라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판결은 USM Haller 시스템의 저작권 보호를 확정한 것이라기보다,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를 다시 심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2. 주요내용**1) 사실관계 및 소송 진행 과정**

원고는 USM Haller라는 명칭으로 모듈식 가구 시스템을 제조·판매해 온 회사이다. 이 시스템은

1) CJEU, Judgment of 04.12.2025, C-580/23, C-795/23, Mio u.a.

고광택 크롬 도금 원형관을 구형 연결부품으로 결합하여 직육면체 형태의 공간격자구조(Raumgitterstruktur)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색상의 금속 지지·폐쇄 패널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각 모듈은 위아래 또는 좌우로 자유롭게 결합될 수 있다. BGH는 그 특징을 ① 여러 직육면체형 모듈의 결합 가능성, ② 가는 크롬 원형관과 구형 연결부품으로 이루어진 공간격자구조, ③ 원형관보다 약간 큰 연결부품의 외경, ④ 원형관과 연결부품의 직접 접합, ⑤ 공간격자구조를 가리지 않도록 안쪽에 평평하게 배치된 금속 패널로 정리하였다.

피고 회사²⁾는 처음에는 USM Haller 시스템의 교체·확장 부품만 판매하였으나, 2017년과 2018년경 온라인숍을 개편하여 완전한 가구 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조립완제품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조립설명서와 조립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무광 부품과 추가 색상의 패널을 “USM Haller를 위한 새로운 한정판(Limited Edition)” 및 “USM Haller를 위한 특별판(Sondereditionen)”이라고 광고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단순한 교체부품 사업을 넘어 원고의 가구 시스템과 동일한 자체 가구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금지, 정보제공과 수익·판매내역에 관한 회계보고서 제출, 경고비용의 상환 및 손해배상책임의 확인 등을 청구하였다. 가구 시스템에 관한 청구는 주위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예비적으로 경쟁법상 보충적 모방보호에 기초하였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가구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 청구와 한정판·특별판 광고에 관한 오인광고 청구를 인용하였다.³⁾ 그러나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USM Haller 시스템의 형상적 특징이 기존에 알려진 형태 자산(Formenschatz)⁴⁾, 기술적 고려 또는 외부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자유롭게 창작적인 결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보아 저작물성을 부정하였다. 다만 경쟁법상 모방보호와 오인광고에 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⁵⁾ 쌍방이 상고하자 BGH는 절차를 중지하고 정보사회지침 제2조 a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의 해석을 CJEU에 제청하였다.⁶⁾ CJEU는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저작물에 더 높은 독창성을 요구할 수 없고, 침해 여부는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침해대상물에서 재인식될 수 있도록 수용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두 대상의 전체인상과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은 그 자체로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법적 쟁점

2) 피고1 회사는 USM Haller 시스템의 교체·확장부품을 판매하였고, 피고2는 2018년 6월 22일부터 피고1 회사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3) LG Düsseldorf, Urteil vom 14.07.2020 – 14c O 57/19.

4) Formenschatz는 특정 분야에서 이미 존재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들의 총체를 가리키며, 통상 “기존에 알려진 형태 자산”으로 표현된다. 원통·구·직육면체와 같은 기하학적 기본형태뿐 아니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관용적 형태를 포함한다. 저작권법에서 이 개념은 신규성 심사의 기준이 아니라 자유이용 영역과 저작자의 창작적 기여를 확정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5) OLG Düsseldorf, Urteil vom 02.06.2022 – I-20 U 259/20.

6) BGH, Beschluss vom 21.12.2023 – I ZR 96/22, USM Haller I.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고정된 가구가 아니라 여러 구성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는 모듈식 가구 시스템도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이다. 둘째, 디자인보호와 저작권 보호가 중첩될 수 있는 응용미술품에 대하여 다른 저작물보다 높은 독창성이나 창작성의 수준을 요구할 수 있는지이다. 셋째, 독창성 판단에서 저작자가 예술적 창작을 의도하였는지 또는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freie und kreative Entscheidung)⁷⁾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는지가 결정적 의미를 가지는지이다. 넷째, 기술적·기능적 제약을 받는 사용물품에서 형성의 여지(Gestaltungsspielraum)⁸⁾가 존재하는지, 나아가 그 여지를 이용한 결정이 자유로울뿐 아니라 창작적이어서 저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 형태의 이용·심미적 효과·미술관 전시·전문가의 인정이 독창성 판단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이다. 다섯째, 저작권 침해 여부를 선행 저작물과 피고 제품의 전체인상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의 수용과 재인식 가능성(Wiedererkennbarkeit)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지이다. 마지막으로, CJEU가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저작자의 창작적 자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후에도 독일 판례의 창작성 수준 개념과 좁은 보호범위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3)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 저작물 개념과 모듈식 시스템의 식별 가능성

독일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저작물을 “개인의 정신적 창작물”(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로 정의한다. BGH는 정보사회지침에서 전제하는 저작물 개념이 유럽연합법의 자율적 개념이므로 독일법의 저작물 개념도 CJEU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대상이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그 대상은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라는 의미에서 독창적(original)이어야 한다. 이는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이 표현되어 저작자의 개성(Persönlichkeit des Urhebers)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창작이 기술적 고려·규칙·기타 제약에 의해 예술적 자유의 여지 없이 결정된 경우에는 부정된다. 다음으로 그러한 창작이 충분한 정확성과

7) BGH와 CJEU의 독일어 버전은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freie und kreative Entscheidung)으로, CJEU의 영어 버전(Painer 판결, Infopaq 판결 등)은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free and creative choices)으로 표현하고 있다. 결정과 선택에는 의미상 미세한 차이가 있다. 선택은 주어진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행위로서 복수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따라서 형성의 여지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결정은 하나를 확정하는 행위로서 선택보다 넓고, 반드시 복수의 대안을 전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글은 결정과 선택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8) Gestaltungsspielraum은 일반적으로 ‘형성의 여지’ 또는 ‘형성여지’로 번역되며, 특히 헌법 및 행정법에서는 문맥에 따라 ‘입법형성의 여지’, ‘정책형성의 여지’ 또는 ‘형성재량’ 등으로도 번역되기도 한다. 그런데 독일 저작권법 판례에서 BGH가 사용하는 Gestaltungsspielraum에는 저작권법상 특별한 의미가 부가된다. 저작권법상 Gestaltungsspielraum은 저작자가 기술적 제약 등을 제외하고도 자유롭게 형태를 정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폭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용어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저작권법상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택 가능성을 표현하는 의미로서 ‘형성의 여지’로 번역한다. 이는 BGH가 디자인법 판례에서 사용하는 ‘형성의 자유’(Gestaltungsfreiheit)에 대응한다. BGH에 따르면 디자인법에서는 디자이너의 형성의 자유의 정도(Grad der Gestaltungsfreiheit)를 고려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남아 있는 형성의 여지(Gestaltungsspielraum)를 이용하여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창작적 결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다(BGH, Urteil vom 02.07.2026, I ZR 96/22, Rn. 26 참조).

객관성을 가지고 식별될 수 있는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

BGH는 USM Haller 시스템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적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그 시스템은 소수의 구성요소가 일정한 모듈방식으로 결합되고 다양한 조합에서도 반복되는 특징적 외관을 가지므로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호되는 것은 모듈식 가구라는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원형관·구형 연결부품·공간격자구조 및 패널의 배치에 나타난 구체적 표현이다.

(2)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통일적 독창성 기준

BGH는 디자인보호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규범적인 원칙·예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응용미술저작물이라는 이유로 다른 저작물보다 높은 독창성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종래 판례의 입장들⁹⁾을 유지하는 것이다.

디자인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서로 다른 목적과 보호요건을 가진다. 디자인보호에서는 신규성(Neuheit)과 독자성(Eigenart)이 중요하고 정보에 밝은 사용자가 받는 전체 인상이 선행 디자인과 다른지가 판단기준이 되는 반면, 저작권 보호에서는 저작자가 남아 있는 형성의 여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반영하는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사용물품은 그 목적상 기술적·기능적 제약을 받으므로 실제로 저작권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으나, 이는 응용미술에 더 높은 법적 보호문턱이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목적 때문에 예술적 형성의 여지가 사실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BGH는 사법재판소의 Cofemel 판결¹⁰⁾이 두 보호의 중첩을 예외적 현상으로 설명한 것도 규범적 의미가 아니라 서술적(deskriptiv)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3) 독창성 판단의 객관성

원심은 저작자가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의식적으로 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저작자가 기술적 제약이 있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창작적 결정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BGH는 독창성 판단이 모든 저작물 유형에 대하여 통일적·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제출된 대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저작자가 예술적 창작을 의도하였는지,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음을 의식하였는지는 결정적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개인적 정신적 창작내용이 대상에 실제로 표현되었는지도이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에 관한 독일의 확립된 판례¹¹⁾와 일치하며, CJEU도 Mio/Konektra 판결에서 법원이 창작적 결정을 추정해서는 안 되고 대상의 형태 안에서 이를 찾아 식별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9) BGH, Urteil vom 13.11.2013 – I ZR 143/12, Geburtstagszug; BGH, Urteil vom 15.12.2022 – I ZR 173/21, Vitruvianleuchte.

10) CJEU, Judgment of 12.09.2019 – C-683/17.

11) BGH, Urteil vom 27.02.1961 – I ZR 127/59, Stahlrohrstuhl I.

다만 어떤 선택이 기술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창작적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기술적 제약에 의해 결정된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지만, 자유롭게 이루어진 선택이라도 대상에 고유한 측면을 부여하고 저작자의 개성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창작적 선택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과 창작적 결정은 구별되어야 한다. 환송심은 USM Haller 시스템의 형상요소 가운데 기술적·기능적 제약에 의해 정해진 부분을 확인한 뒤, 그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형태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반영하는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식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4) 기존 형태 자산·미술관 전시·심미적 효과

BGH는 기존 형태 자산의 사용 자체가 독창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저작자가 그 형태들의 배열(Anordnung)에서 창작적 결정을 표현하였다면 독창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작품이 미술관이나 예술전시회에 전시되었거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정도 독창성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²⁾ 그러한 사정이 창작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창작 당시 이미 독창성이 존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술관 전시나 전문가의 인정이 그 자체로 독창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그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신규성, 기술적 성취, 특별한 사용가치 또는 해당 박물관의 수집 방침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미 때문에 전시되거나 인정받은 경우에는 독창성을 추인하기 어렵다. 심미적 효과 역시 그 자체로 저작권 보호를 근거 짓지 않으나, 그러한 효과가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에 기초하고 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독창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원심은 USM Haller 시스템이 매우 심미적 인상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작자들의 창작과정에 대한 진술에서 심미적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데, BGH는 이러한 판단이 저작자의 주관적 의도를 지나치게 중시한 것이라고 보았다.

(5) 저작권 침해와 재인식 가능성 - 전체인상 비교론의 수정

BGH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선행 저작물의 독창성을 근거짓는 구체적 창작적 요소가 동의 없이 이용되고, 그 요소가 침해대상물에서 재인식될 수 있도록 수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³⁾ 수용된 부분이 양적으로 작더라도 그 부분 자체가 저작자의 지적 창작물을 표현한다면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¹⁴⁾ 이에 따라 먼저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와 자유이용이 가능한 요소를 구별해야 하며, 일반적 아이디어·기술적 해결·스타일·유형 또는 기존 형태 자산은 보호되지 않고, 오직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요소의 수용만이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12) BGH, Urteil vom 10.12.1986 - I ZR 15/85, Le Corbusier-Möbel.

13) BGH, Urteil vom 07.04.2022 - I ZR 222/20, Porsche 911.

14) BGH, Urteil vom 27.04.2017 - I ZR 247/15, AIDA Kussmund.

특히 BGH는 재인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상의 전체인상과 선행 저작물의 전체인상을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던 종래 판례¹⁵⁾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두 대상의 전체인상 비교는 디자인보호의 판단기준이고, 저작권에서는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서 여전히 인식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대상 전체를 관찰할 필요는 있다. 수용된 요소가 새로운 대상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면서 전체 속에서 희석·퇴색하여 더 이상 재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제된 것은 양 대상의 전체인상을 서로 비교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새로운 대상 전체 속에서 보호되는 요소가 재인식되는지를 판단하는 전체적 관찰은 유지된다.

(6) 창작성 수준과 보호범위

BGH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나치게 낮지 않은 창작성 수준”이 필요하다는 종래 판례를 유지하되, 이를 유럽연합법상 독창성에 추가되는 독일법상 독립적 보호요건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BGH에 따르면 이는 독창성 기준의 양적 측면을 의미하며, 저작물에서 개별성(Individualität)을 인식할 수 있을 창작성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¹⁶⁾¹⁷⁾

보호범위에 관해서는 종래 설명을 수정하였다. CJEU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저작자가 창작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용하였는지 또는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응용미술저작물에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한 배타적 권리와 동일한 침해 판단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BGH는 창작성의 수준과 재인식 가능성 사이에 사실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높은 독창성과 표현력을 가진 저작물은 저작자의 개성을 분명하게 반영하므로 그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 수용되었을 때 비교적 쉽게 재인식되는 반면, 창작성 수준이 낮은 저작물은 보호되는 표현의 식별력이 약하므로 동일한 요소가 수용되더라도 새로운 대상에서 재인식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사용 물품에서는 사용 목적 때문에 형성의 여지가 제한되어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가 소수에 한정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용만이 침해가 될 수도 있다. BGH는 이를 창작성 수준이 보호범위를 법적으로 축소하는 규범적 관계가 아니라, 표현력과 재인식 가능성 사이의 서술적·사실적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7) 판결의 결론

BGH는 원심이 응용미술저작물에 지나치게 높은 독창성을 요구하고 저작자의 주관적 관점을 결정적으로

15) BGH, Urteil vom 07.04.2022 – I ZR 222/20, Porsche 911; BGH, Urteil vom 15.12.2022 – I ZR 173/21, Vitrineneuchte.

16) BGH, Urteil vom 20.02.2025 – I ZR 16/24, Birkenstocksandale.

17) 유럽사법재판소가 사용하는 독창성(Originalität)은 독일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개별성(Individualität)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개별성은 저작자의 개성이 저작물에 객관적으로 표현되어 나타난 상태를 의미한다. 창작성 수준(Gestaltungshöhe)은 이러한 개별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독일 저작권법의 전통적 개념인 창작성 수준을, 독창성에 추가되는 별개의 요건이 아니라 독창성 기준의 양적 측면으로 재해석하였다.

고려한 점에서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저작권에 기초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한편 경쟁법상 보충적 모방보호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는, 주위적으로 제기된 저작권 청구에 대한 심리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판단대상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한정판 및 특별판이라는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고가 출시한 특별판 또는 원고와의 라이선스 관계에 기초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아 오인광고에 관한 원심판단을 유지하였다.

3.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이 판결은 먼저 응용미술저작물에 일반 저작물과 다른 독자적인 높은 창작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응용미술품의 기능적 성격은 법적 보호 문턱을 높이는 근거가 아니라,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형성의 여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실적 조건이다.

둘째, 독창성 판단의 중심을 저작자의 내적 의도에서 구체적 저작물의 표현으로 옮겼다. 저작자의 개성은 심리적 성격이나 예술가로서의 자기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저작자 자신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결정의 결과임을 의미하며, 전통적 독일법상 저작물의 개별성은 이러한 결정이 구체적 표현에 나타난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BGH가 저작권 침해에서 전체인상 비교론을 명시적으로 수정한 점이 중요하다. 앞으로 응용미술저작물의 침해 여부는 제품 전체가 비슷한 인상을 주는지가 아니라 보호되는 구체적 창작적 요소가 새로운 대상에서 재인식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디자인법상의 전체인상 판단과 저작권법상의 표현 이용 판단을 분리한 것이다.

넷째, 창작성 수준과 보호범위의 관계를 규범적 관계에서 사실적 관계로 재구성하였다. 다만 법원이 낮은 창작성 수준을 이유로 거의 동일한 복제만 침해라고 판단한다면 종래의 좁은 보호범위론이 재인식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유지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하급심은 추상적인 창작성 수준에서 보호범위를 곧바로 도출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를 특정하고 그 요소가 피고 제품 전체에서 실제로 재인식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도 응용미술저작물에 일반 저작물보다 높은 창작성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 다만 한국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는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을 것(복제가능성)과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분리가능성)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과 차이가 있다.¹⁸⁾ 여기서 법문상의 “독자성”을 일반적 창작성보다 높은 예술성으로 이해하면 사실상 특별히 높은 문턱을 설정하게 되므로, 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분리가능성 요건을 창작성 가중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기능적 제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 제약 이후에도 남아 있는 형성의 여지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요소의 선택·배치·조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BGH의 접근은 한국법에도 참고가 된다. 이는 지형·규칙 등의 제약에도 설계자가 구성요소를 선택·배치·조합하여 창조적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창작적 표현에 현실적 제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최근 대법원의 골프코스 설계도면 판결¹⁹⁾의 문제의식과도 조응한다. 또한 침해 판단에서 두 제품의 추상적인 전체인상을 비교하기보다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을 먼저 특정하고 그 표현이 피고 제품에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서 창작적 표현형식만을 대비하도록 하는 한국 판례의 태도를 구체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USM Haller II 판결은 CJEU의 Mio/Konektra 판결을 독일 저작권법에 수용하면서, 응용미술저작물의 독창성, 창작성 수준, 보호범위 및 재인식 가능성의 관계를 다시 정립한 판결이다. 환송심에서 USM Haller 시스템의 저작물성과 피고 제품의 침해 여부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남아 있으나, 이 판결이 제시한 일반원칙은 향후 응용미술저작물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1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19)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9671 판결.

참고 자료

- 연방대법원 판결문 (https://www.bundesgerichtshof.de/SharedDocs/Entscheidungen/DE/Zivilsenate/IZS/2022/I_ZR_96-22A.pdf?__blob=publicationFile&v=4?__blob=publicationFile&v=1).
- Einmal OLG, BGH, EuGH und wieder zurück. beck-aktuell, 02.07.2026 (<https://www.beck-aktuell.de/node/201166>).
- BGH kassiert USM-Haller-Urteil, Legal Tribune Online, 02.07.2026 (https://www.lto.de/persistent/a_id/60336).
- 박희영, [EU] EU와 독일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개념, 2024-01, 이슈리포트, 한국저작권위원회.
- 박형욱, Mio 사건과 Konektra 사건에 대한 CJEU Szpunar 법무관의 견해, 유럽법제동향, 로앤비, 2025.5.
- 박희영, EU 저작권법의 응용미술저작물 보호 요건 -스웨덴 Mio사건과 독일 Konektra사건에 관한 CJEU 법무관 의견 -, 저작권 동향 제9호, 2025.8.
- 김경숙, CJEU, Mio/Konektra 판결에서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요건 판단 (C-580/23 및 C-795/23), 이슈리포트 2025. 12.